

## 협회활동 보고

### 1. 제도개선 추진

-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B-C유 황함유량 기준강화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각각 2년 유예하여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환경부는 종합검토 중임.
- 한전으로 역송전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인상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접촉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중재예정임.
- 발전기 및 터빈의 검사주기를 일본검사제도와 비교검토하여 현재 2년주기를 3년으로 완화하고 검사시기도 당해검사연도내로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전기사업법이 개정검토중에 있으므로 반영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음.

### 2. 발전사업에 사용된 연료유의 수입부과금 환급

집단에너지 사업자로 허가된 업체에서 발전용보일러에 사용된 가스 및 황함유량 1.6% 미만의 중유등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산업단지공단 반월열병합발전사업본부 및 에너지관리공단(목동 및 노원열병합발전소, 대전 3·4공단 열병합발전소)에서는 이미 환급을 받았고 다른 업체들도 신청중에 있다.

### 3. 일본전기사업법 개정판 번역발간 배포

일본전기사업법령집을 입수하여 사무국에서 번역발간하여 배포하므로서 향후 제도개선 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.

### 4. 열병합발전관련 논문집 제작

에너지관리지, 대한전기협회지, 전기기사, 열산업정보, 월간전기, 전기학회지, 해외전력정보, 조명·전기설비 학회지, 설비기술등 월간 정기간행물에 발표된 열병합발전관련 논문을 발췌복사하여 열병합발전 논문집을 제작, 협회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다.(총 35편)

### 5. '98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 준비

1998년 7월 2일~3일(2일간) 울산 현대중공업 회의실에서 개최예정인 '98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의 주제 선정, 참가안내등 준비를 하였다.

### 6. 지출예산 절약활동

- 지출예산절약을 위하여 읍셋 인쇄하여 1회에 100여만원이 소요되던 협회지 인쇄를 표지만 읍셋인쇄하고 내용은 경인쇄로 전환하므로서 1회에 약 60여만원의 지출예산을 절약하고 있다.
- 기타 지출예산도 최대한 절약집행하고 있다.

## 사무국에서 알려드리는 말씀

### 1. '98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 개최

1. 실시기간 : 1998년 7월 2일-3일(2일간)
  2. 장 소 : 현대중공업(주) 회의실(울산광역시)
  3. 참여대상 : 열병합발전 관련업체 및 단체인원
  4. 주 최: (사)한국열병합발전협회
  5. 신청방법 : 협회 사무국으로 신청
  6. 문의처 : 협회 사무국  
T. (02)646-3046, F. (02)648-6008  
<주제 및 강사>
- 보일러 터빈 정비기술 및 불시고장사례와 대책 (발표자: 한전기공 전문기술지원실 정재원 부장)
  - 보일러 스래그 제거 신 공법 (발표자: 오산전문대

- 교수, (재)계면공학연구소 전문위원 박양서)
- 회전체의 발란싱과 효과 (발표자: 현대중공업(주) 이학순 부장)
- 열병합발전 기기개발 동향 (발표자: 현대중공업(주) 중전기사업부 이용학 부장·조주연 차장)
- 현대중공업 시설 견학
- 열병합발전 운용관련 법규 소개 (발표자: 협회 사무국장 배성준)
- 한전 수전요금에 따른 열병합발전 부하조정사례와 효과 (발표자: 한솔제지(주) 발전과장 오장근)
- 자동제어시스템 소개 및 고장사례와 대책 (발표자: 한국전력공사 김은기 부장)
- 열병합발전시설 견학(SK(주))

## II. 17회 전기산업 진흥촉진대회 포상 추천

※ 대한전기협회에서 우리 협회로 포상 추천의뢰가 있었으며 1996년도 (격년제 포상)에는 포항종합제철(주) 요원을 추천하여 포상하였음.

1. 신청대상: 전력산업계,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계, 전기관련공사 및 용역업체에서 전기사업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.
2. 신청기간: 1998년 9월 15일 (우리 협회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998년 8월 30일 까지 협회로 신청하여야 함.)
3. 포상일시: 1999년 4월 10일 (예정)
4. 포상인원: 추후결정

<참고: 1997년도 수상인원>

구분	산업 훈장				산업 포장
	금탑	은탑	동탑	석탑	
인원	1	1	1	1	1

표 창			계
대통령	국무총리	산업자원부장관	
2	4	21	33

5. 문의처: 한국열병합발전협회  
전화/(02)646-3046, FAX/(02)648-6008  
대한전기협회  
전화/(02)274-1661, FAX/(02)277-5174

## III. 석유류 수입부과금 환급신청 안내

1. 개요 : 수입석유에 대해서 일정금액의 수입부과금을 유가에 부과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석유개발공사를 통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.

2. 부과기준(시행령 제24조, 통산부고시 제1996-461호: 96. 12. 31)
  -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
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미합중국 통화 12센트 이내에서 통산부 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
  - 통산부 고시 제1996-461호(96. 12. 31) 제8조(부과금의 부과기준)  
수입석유(액화천연가스, 프로판 및 부탄 제외)  
: 미합중국 통화 1.7\$/바렐(1리터당 1.07센트)
3. 부과 대상 :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: 부과금 징수대상 석유)
4. 부과금 환급 대상
  - 환급대상(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) 제3호 : 저유황중유, 액화천연가스,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환급 대상이 됨.
  - 용어의 정의 : 저유황 중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1.6%이하인 중유(B-A, B-B, B-C)를 말하며 저유황 방카시유라 함은 유황함량이 0.3%이하인 방카시유를 말한다.
  - 열병합발전에 사용된 연료의 부과금 환급대상 : 발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한 중유(유황 함량 0.3% 이하의 방카시유 사용시는 그 량)의 량
5. 부과금 환급신청 절차
  - 발전용 보일러에서 사용한 대상유류의 량을 정확하게 산출
  - 대상유류 공급업체로 사용량 통보
  - 대상유류 공급업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석유개발공사로 환급신청
  - 석유개발공사에서 심의후 결정 및 환급

## 문 헌 정 보

### 1. 주요 외국의 전기사업 관련 법령

(한전: 1,290면)

- 미국 : 연방동력법, 공익사업규제정책법, 에너지정책법
- 영국 : 전기법, 에너지법
- 독일 : 에너지사업육성법, 연방전기요금령, 에너지가격관계법
- 프랑스 : 전력공급법, 수력이용법, 원전시설 관련법령

- 일본 : 전기사업법('96 개정전), 전원개발촉진법
- 중국 : 전력법, 전력망 관리 조례
- 대만 : 전기사업법, 전기사업 등기규칙, 자가용 발전설비 등기규칙

### 2. 일본 전기사업법령집 개정판(일본: 80면)

- 일본전기사업법, 전기사업법시행령,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입수, 번역 발간

### 3. 집단에너지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연구